

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 의견청취

의안번호	30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8.17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
(주택재개발사업부문/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)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 6. 25)로 수립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기본계획 변경(안)을 수립하였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변경내용

구분	생활권 유형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 (ha)	계 획 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 단계	사업시행 방식	정비 유형
신규	B	24	홍은동	19-19 번지일대	2.3	190	60	12층 이하	2	주택재개발	전면

4. 주민의견청취 결과

- 공람기간 : 2007. 6.14 (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)
- 공람장소 : 서울시 주거정비과, 서대문구 도시개발과
- 제출의견 : 접수 의견 없음

5. 관련부서 의견

관련부서	협의의견	조치의견
공원과	-별도의견 없으나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내 적정규모 이상의 공원녹지 조성 요망	-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예정임
도시계획 상임기획단	-이견없음	-
건설교통부	- 2020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자치구별, 계획년도별 인구배분계획 및 기반시설 범위내에서 추진 -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콤팩트한 도시계획을 위해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층수제한을 완화하되 이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시 공원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 검토 -정비계획수립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계획을 포함	- 추후 정비계획수립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배분계획 범위내에서 계획하겠으며,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예정. - 추후 정비계획수립시 검토예정임 -추후 정비계획수립시 검토예정임.